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 5.27. 시행)됨에 따라, 운항시각의 배분업무를 공항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상황의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가입을 사업자 단위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동지역 내 기내대기 시 관계기관 협조 요청 (안 제25조)

이동지역 내에서 장시간 기내대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항운영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접수·전파, 관제 지원 또는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 우선 처리 등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은 문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4조)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는 지방항공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신고는 면허기준인 항공기 대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하도록 시행제도에 예외를 둠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과, 이동지역 내 지연 보고,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울러, 운항시각 신청접수·배분·조정·회수 등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다. 이동지역 내 지연금지 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안 별표3)

이동지역 내 장시간 기내대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5천만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10)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기구류 제외)의 등록요건 중 보험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이동지역 내 지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11)

이동지역 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동지역 내 2시간을 초과하여 적적할 음식물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2차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00~04.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

대통령령 제 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이동지역 내 기내지연시 협조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이동지역에서 머무를 경우 상황접수·전파·모니터링
2. 계류장 재배정, 관제지원 및 항공기 통제
3. 승객 하기(下機) 절차 지원
4. 항공기 입·출항 보고서, 탑승객 명부 우선 처리
5.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 우선 처리
6. 승무원 보건상태 신고 및 승무원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 우선 처리
7.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하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34조(중전의 제33조)제1항제10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서 이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항공기의 도입·처분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변경(국내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2. 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발생 보고의 수리
나.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요청

제34조(중전의 제33조)제1항제31호(중전의 제32호)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중전의 제33조)제1항제31호(중전의 제32호)마목에 1)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 변경인

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자본금의 변경

3) 대표자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상호 변경(국내사업소만 해당한다)

5) 항공기 수의 변경

6) 항공기등록부호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관할별로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 신청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보된 운항시각을 제외한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의 배분 또는 조정
3.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
4.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운항시각의 조정
5. 기타 운항시각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시스템 운영 등 운항시각 관련 업무 지원

별표 3 제2호 타목1) 및 타목2)를 각각 타목2) 및 타목3)으로 하고, 같은 표 타목2) 중 “법 제60조제10항”을 “법 제60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표 타목1)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8조제1항제17호”를 “법 제28조제1항

제18호”로, 같은 란 중 “제59조제1항제9호”를 “제59조제1항제9의2호”로 하며, 같은 표에 타목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1조의2제1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7호, 제59조제1항제9호	5,000	1,000	200	5,000
--	---------------------------	-------	-------	-----	-------

별표 3 제2호 타목3) 중 “법 제60조제10항”을 “법 제60조제12항”으로 하

고, 같은 표 타목2)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8조제1항제19호 및 제59조제1항제9의2호

별표 3 제2호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8조제1항제19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0호”로 한다.

별표 10 제1호마목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에 가입하되, 이 경우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초경량비행장치(기구류 제외)에 대하여는 사업자별로 보험가입 할 수 있다.
--

별표 10 제2호라목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에 가입하되, 이 경우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초경량비행장치(기구류 제외)에 대하여는 사업자별로 보험가입 할 수 있다.
--

별표 11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호	150 250	300 375	500 500
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	250	375	500
다.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폐업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3호	250	375	500
라. 공항운영자가 법 제27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	150	300	500
마.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1항	1,000	1,500	2,000
바.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2	300	400	500
사. 법 제38조(법 제43조제5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5항 및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5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250	375	500

아. 법 제61조제6항(법 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2호					1) 요금표 등을 갖추 두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 둔 경우	250	375	500	
자. 법 제61조제10항(법 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3호	400	500	500		거. 법 제62조제5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9호			
차. 법 제61조제12항(법 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4호	250	375	500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	400	500	500	
카. 법 제61조의제2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5호	400	500	500		2)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인 경우	250	375	500	
타. 법 제61조의제3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6호	400	500	500		너. 법 제63조제4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0호			
파. 법 제62조제1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7호	250	375	500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하. 법 제62조제4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 두지 않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 둔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8호					2)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50	375	500	
						더.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1호	150	300	500
						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2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50	375	500	
						머.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3호			

1)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250	375	500
버. 법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84조제 2항제24호	250	375	5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5조(이동지역내 기내지연 시 협조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 에게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이동지 역에서 머무를 경우 상황접수 · 전파·모니터링 2. 계류장 재배정, 관제지원 및 항공기 통제 3. 승객 하기(下機) 절차 지원 4. 항공기 입·출항 보고서, 탑 승객 명부 우선 처리 5.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 차 우선 처리 6. 승무원 보건상태 신고 및 승 무원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 우선 처리 7.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제25조 ~ 제32조 (생략)	요청하는 경우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하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만 위임한다.	제26조 ~ 제33조 (현행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와 같음)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 --.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항공운송

	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서 이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신설>	나. 항공기의 도입·처분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변경 (국내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조정·회수	<삭제>
15. ~ 31. (생략)	14. ~ 30. (현행 제15호부터 제31호까지와 같음)
32.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1. ----- -----
가. ~ 라. (생략) 마. 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획 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신 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
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으
로서 이를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
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자본금의 변경
3) 대표자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상호 변경(국내사업소만
해당한다)
5) 항공기 수의 변경
6) 항공기등록부호의 변경
32. 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
른 이동지역 내 지연발생

33. ~ 35. (생 략)

<신 설>

보고의 수리

나.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
른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
운영자에게 협조 요청

33. ~ 35.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
국공항공사에 관할별로 위탁한
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 신청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
시각(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유보된 운항시
각을 제외한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의 배분 또는 조정
3.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항
시각 회수
4.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운
항시각의 조정
5. 기타 운항시각의 효율적 배

②·③ (생략)	<u>분을 위한 시스템 운영 등 운항시각 관련 업무 지원</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4조·제35조 (생략)	제35조·제36조 (현행 제34조 및 제35조와 같음)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제 항공 운송 사업	국내 항공 운송 사업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외국인 국제 항공 운송 사업	항공 운송 총대 리점 업
타. 소비자 보호						
1) 법 제61조의2제1항(법 제60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7호, 제59조제1항제9호	5,000	1,000	200	5,000	
2) 법 제62조제4항(법 제60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8호,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제9의2호	500	250	50	500	50
3) 법 제62조제5항(법 제60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9호 및 제59조제1항제9의2호	1,000	500	100	1,000	
파.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0호 및 제59조제1항제21호	10,000	1,000	1,000	10,000	

별표10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

1. 법 제2조제26호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	기준
마. 보험(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에 가입 ~~하되~~ , 이 경우 가입금액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초경량비행장치(기구류 제외)에 대하여는 사업자별로 보험가입 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26호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	기준
라. 보험(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에 가입 ~~하되~~ , 이 경우 가입금액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초경량비행장치(기구류 제외)에 대하여는 사업자별로 보험가입 할 수 있다.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법 제61조의제2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5호	400	500	500
타. 법 제61조의제3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6호	400	500	500
파. 법 제62조제1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7호	250	375	500
하. 법 제62조제4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 두지 않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 둔 경우 1) 요금표 등을 갖추 두지 않은 경우 2)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 둔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8호	150 250	300 375	500 500
거. 법 제62조제5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9호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		400	500	500
2)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인 경우		250	375	500
나. 법 제63조제4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0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50	375	500
다.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1호	150	300	500
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2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50	375	500
머.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3호			
1)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250	375	500
버. 법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4호	250	375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항공산업과	
연 락 처	(044) 201-4211, 4215 (044) 201-4231